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3

이 자료는 2024년 7월 25일(목)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4. 7. 25.

기획재정부

목 차

I .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중견기업 범위 조정	1
①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1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1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2
① 현행 제도	2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
③ 적용시점	2
(3)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3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3
② 점감구조 적용 시기	3
③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는 이유는?	3
(4)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인건비)	4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
(5)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5
① 현행 제도	5
② 개정 취지	6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7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8
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취득 방법	8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8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 · 승계 제도 개선	9
① 현행 제도	9
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취지	9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10
① 현행 제도	1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0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11
① 현행 제도	1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1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12
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	12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12
(5)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13
① 현행 제도	1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3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14
① 개정 취지	14
② 개정 내용(법인세 세액공제)	15
③ 법인세 세액공제 계산사례	15
④ 개정 내용(배당소득 분리과세)	16
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사례	17
⑥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차이점	18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19
① 개정 취지	19
② 국내투자형 ISA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	19
③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	19
(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20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20
②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	20
③ 배당소득 과세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20
(4)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21
① 현행 펀드 과세체계 및 개정 내용	21
② 시행시기	21

II.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2
① 개정 취지	22
② 적용 시기	22
③ 적용 사례	22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23
① 개정 취지	23
② 현재 출산·양육수당과 구분	23
③ 적용 특례	23
④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과세 제한 이유	24
⑤ 세부담 완화 사례	24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25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25
② 기대 효과	25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6
① 현행 제도	26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27
(2)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28
① 근로장려금(EITC) 개요	28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9
③ 개정 효과	29
(3)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30
① 현행 제도	3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30
(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31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31
②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한 이유는?	31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32
① 현행 제도	32
② 개정 취지	32
③ 적용 사례	33
(2) 주류 관련 제도 개선	34
① 택주의 첨가원료를 확대(향료·색소 추가)한 이유는?	34

III.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1)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35
①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35
② 개정 취지	35
(1-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36
①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36
② 개정 취지	36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37
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	37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38
① 개정 취지	38
② 시가의 판단기준	38
③ 할인금액 적용 사례	38
(4)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39
① 현행 제도	3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39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40
① 현행 제도	4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0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41
① 개정 취지	41
②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부 폐지되는지?	41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42
① 현행 제도	42
② 납세조합 활용 납부 사례	42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43
① 현행 제도	4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3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44
① 현행 제도	44
② 개정 내용	44
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인지?	45
④ 내년에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45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46
① 개정 내용	46
② 개정 취지	46
(7)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47
① 현행 제도	47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7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48
① 현행 제도	48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8
(2)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49
① 도입 취지	49
② 제도 개요	49
③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	50
④ '28.1.1.부터 시행하는 이유	50
(3)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51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1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52
① 현행 제도	52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52
③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	52
(5)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53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3
② 183일 기준 변경 관련 사례	53
(6)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54
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개요	54
② 교환대상 정보	54
(7)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55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개요	55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5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56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6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56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57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57
② '26년부터 시행하는 이유	57
(3)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58
① 현행 제도	58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8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59
① 현행 제도	5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9

2. 납세자 권리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60
① 현행 제도	6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0
(2)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61
① 현행 제도	6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1

V. 기타

(1)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62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62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2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63
①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63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64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65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66
⑤ 신고기한 특례 규정 개정 내용 및 배경	67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중견기업 범위 조정 (상세본 p.3)

①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제외)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닐 것
- (독립성)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②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아닐 것
- (규모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미만인 기업일 것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
- (개정 내용)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
(R&D 세액공제 적용시 5배)로 조정

<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업종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보건사회복지, 기타법인서비스 등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중견기업	4,500억 원	3,000억 원	2,400억 원	1,800억 원	1,200억 원
R&D 비용	7,500억 원	5,000억 원	4,000억 원	3,000억 원	2,000억 원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매 5년마다 소관부처에서 재검토

- (적용시점) 조특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상세본 p.4)

① 현행 제도

-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3년간 유지하는 제도

<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

구분	내용
규모 기준	① 매출액
	② 자산
	③ 관계회사간 매출액 합
유예기간	최초 사유발생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졸업유예 기간 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상장기업 우대)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추가 2년 유예(3 → 7년)

③ 적용 시점

- 조특령 시행일(하반기 수시개정 예정)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출액 또는 자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부터 적용

(3)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상세본 p.6)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 (유예기간 종료)한 경우 3년(일반 R&D의 경우 5년)간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 적용
- (개정 취지)**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 변화 >

(단위: %)

구 분	R&D비용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	신성장·원천	일반	국가전략	신성장·원천	일반
중소기업	40	30	25	25	12	10
중견기업 (현행→개정)	30 → 35	20 → 25	15 → 20	15 → 20	6 → 9	5 → 7.5

② 점감구조 적용 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 (유예기간 종료)한 기업에 점감구조 적용
 - '21년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이미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점감구조 적용 가능
- * (예) '21년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3년('22~'24년)간 졸업이 유예되고 '25년에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점감구조에 따른 공제율 적용

③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는 이유는?

-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되, 상대적으로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장을 집중 지원
 - 코스피·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은 졸업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3 → 7년)

(4)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인건비)

(상세본 p.8)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R&D 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연구 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 적용

* (예) 연간 실제 투입시간 비율이 국가전략기술 90%, 일반 10%인 연구원:

(현 행) 인건비의 100% 일반 공제율 적용 →

(개정안) 인건비의 90%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인건비의 10%는 일반 공제율 적용

- ** 내국인이 실제 연구 투입시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R&D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원의 실제 투입 시간 입증 자료를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 필요

- **(개정 취지)** 연구원이 실제 연구한 시간에 맞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

- 국가전략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과 연관된 일반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5]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상세본 p.11)

① 현행 제도

□ 세제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유도

- (지원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에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공제액) 기업규모·소재지·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

① 기본공제	공제액 (단위:만원)				② 추가공제	공제액 (단위:만원)		
	증소(3년)		증견 (3년)	대 (2년)		증소		
	수도권	지방				증견	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 (공제기간 및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 추징

② 개정 취지

① 세액공제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여 고용유인 기능 강화

- (현황) 계산의 복잡성·가산세 부담 등으로 고용유인 효과 제한
 - 기업의 채용시점에 공제여부가 불투명하여 세금 신고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치게 됨에 따라 고용유인 기능 부족
 -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전액 추징되고, 계산이 틀릴 경우 가산세 등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
- (기대효과) 기업이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공제여부와 공제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용창출 유인기능 강화

【참고】 상시근로자 및 세액공제액 계산 예시

- (24년) 단시간 근로자 5명 4월 채용(전원 청년외, 수도권 중소기업 가정)
→ (상시근로자) $5 \times 0.5 \times 9/12 = 1.87\text{명} \uparrow$, (세액공제) $1.87 \times 850 = 1589.5\text{만원}$
- (25년) 단시간 근로자 중 3명 6월 퇴직, 9월 기간제 2명 채용
→ (상시근로자) $3 \times 0.5 \times 5/12 + 2 \times 0.5 + 2 \times 4/12 = 2.29\text{명}$,
(세액공제) ①'24년분 1589.5 + ②'25년 신규($2.29 - 1.87 = 0.42$) 357 = 1946.5만원
- (26년) 기간제 근로자 2명 1월 퇴직 → (상시근로자) 1명, (세액공제) 없음
<추징> ①'24년분 △1,479만원($\triangle 0.87\text{명} \times 2\text{년}$) + ②'25년분 △357만원($\triangle 0.42\text{명} \times 1\text{년}$)

② 기업의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임금격차 완화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 (현황)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근로여건 개선 지원 부족
 -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나, 전환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근로자*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
- * 정년퇴직자, 자발적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등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부적합
- (기대효과)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하여 임금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 (계산의 전제) 지방 중소기업, 모두 청년, T년도 인건비 증가율 20% 미만, 연봉(기간제 3,000, 단시간 1,500, 초단시간 1,000만원), 입·퇴사일 매월 15일 가정

(사례1) ①T년 3월 계속고용 근로자* 5명 채용 + ②T+1년 3월 2명 퇴사

*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명)	공제/추징(만원)	계속고용	탄력고용
T	4.16 =5×10/12	6,448 =4.16×1,550	-	-
T+1	3.33 =3+2×2/12	△1,286.5 =-0.83×1,550	3명, 7,200만원	-
T+2	3.00	△511.5 =-(1.16-0.83)×1,550	3명, 7,200만원	-
합계	4,650만원 (= 6,448 - 1,286.5 - 511.5)		14,400만원 (= 7,200 + 7,200)	

(사례2) ①T년 3월 기간제(1년 이상) 근로자 5명 고용 +

②T+1년 12월 2명 퇴사, 3명 정규직 전환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명)	공제/추징(만원)	계속고용	탄력고용
T	4.16 =5×10/12	6,448 =4.16×1,550	-	2,500만원 =12,500 × 0.2
T+1	4.83 =3+2×11/12	11,386.5 =6,448(고용유지) +0.67×1,550(신규) +3×1,300(정규 전환)	-	175만원 =(13,750-12,875) × 0.2
T+2	3.00	△4,634.5 =-(4.16-3)×1,550×2 -0.67×1,550	3명, 7,200만원	-
T+3	-	-	3명, 7,200만원	-
합계	13,200만원 (= 6,448 + 11,386.5 - 4,634.5)		17,075만원 (= 14,400 + 2,675)	

(사례3) ①T년 1월 계속고용 근로자 1명, 기간제(18개월) 근로자 1명 고용 +

②T+1년 7월 기간제 1명 퇴사, 단시간·기간제(16개월) 2명 고용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명)	공제/추징(만원)	계속고용	탄력고용
T	2.00	3,100 =2×1,550	1명, 2,400만원	600만원 =3,000 × 0.2
T+1	2.00 =1+1×6/12 +0.5×2×6/12	3,100 =2×1,550(고용유지)	1명, 2,400만원	-
T+2	1.83 =1+2×0.5×10/12	△527 =-(0.17×2×1,550)	-	
합계	5,673만원 (= 3,100 + 3,100 - 527)		5,400만원 (= 4,800 + 600)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상세본 p.13)

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취득 방법

- 광업권·조광권^{*}의 ①직접 취득 뿐 아니라, ②간접 취득과 ③외국 자회사를 통한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광업권)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

(조광권)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

① (직접 취득) 해외의 광업권·조광권을 취득

② (간접 취득)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

- 외국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광구의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

③ (외국자회사 통한 취득)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①, ②의 방법으로 광업권·조광권 취득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 지원 필요

- (개정 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 완화

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도 포함

② 내국인 100%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

2. 기업경쟁력 제고

(1) 기업상속 · 승계 제도 개선 (상세본 p.17)

① 현행 제도

-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 시 상속세 부과

< 기업상속공제 제도 주요내용 >

구 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금액 : 기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300억 원 20년 이상 : 400억 원, 30년 이상 : 600억 원
피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은 20% 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기업에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 유지 등) 주된 업종 유지(대분류내 변경 허용), 대표이사 종사,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자산 유지) 기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지분 유지)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상속재산을 추후 양도 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② 기업상속공제 확대 취지

-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 · 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얹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세본 p.20)

① 현행 제도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것임

-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에서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함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상세본 p.21)

① 현행 제도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선박표준 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제도(일명 '톤세' 제도)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 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동 제도는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05년 도입 후 5년 단위로 일몰 연장 중

*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20여 개 국가에서 톤세 제도를 운영 중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차등(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해 30% 할증)하여 적용

*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 톤당 1운항일 이익 >

개별선박 순톤수	현 행	톤당 1운항일 이익(단위: 원)	
		개정안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1,000톤 이하분	14	(좌 동)	18.2
1,000~10,000톤	11		14.3
10,000~25,000톤	7		9.1
25,000톤 초과분	4		5.2

- (개정 취지)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 인상

-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 해운업 경쟁력 강화 도모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상세본 p.23)

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벤처기업법」 §16의11)
 - (요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 하락(30% 미만 또는 최대주주 지위 상실)
 - (존속기간) 최대 10년(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 (절차) 요건충족 후 주주 동의(발행주식총수의 3/4)를 얻어 발행
 - (현물출자) 총주주 동의 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 가능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최근 도입('23.11월)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 (개정 내용)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의 발기인 & 상무 이사 &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벤처기업법」 §16의11)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벤처기업법」 §16의12)

-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방식, 과세이연 신청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5)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상세본 p.25)

① 현행 제도

-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

* (분할법인)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0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하고, '시가-장부가액' 차이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 (적격분할 요건) 사업목적의 분할, 사업의 계속성, 고용 승계,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 (사업목적) 5년 이상 계속하던 사업을 분할
(사업의 계속성)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유지
(고용 승계) 근로자 80% 이상을 승계하고,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비율 유지
(지분의 연속성)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고,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도록 규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

- (개정 취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을 반영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합리화

* 현재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기간: '24.6.4.~7.16.)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상세본 p.26)

① 개정 취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 주요국 주주환원율(%), 배당성향+자사주매입률, '14~'23 평균):
(韓)29 (美)91 (中)31 / (선진평균)67 (신흥평균)38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경영자와 투자자 간 유인구조를 일치 시킴으로써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
 - 주주환원 확대는 주식 보유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개정 내용(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 ①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②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③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 ②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 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금액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③ 법인세 세액공제 계산사례

□ (사례1) 주주환원금액이 '22~'24년 평균 1조원, '25년 1.2조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20%인 甲 기업(자율공시 이행 상장법인)

법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	세액공제 금액
甲	대상 금액 = 1,200억원 $= [12,000억원 - (10,000억원 \times 1.05)] \times 80\%$	세액공제 금액 = 60억원 $= \text{Min} [1,200억원 \times 5\%, 12,000억원 \times 1\%]$ *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사례2) 주주환원금액이 '22~'24년 평균 0.8조원, '25년 1.2조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30%인 乙 기업(자율공시 이행 상장법인)

법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	세액공제 금액
乙	대상 금액 = 2,520억원 $= [12,000억원 - (8,000억원 \times 1.05)] \times 70\%$	세액공제 금액 = 120억원 $= \text{Min} [2,520억원 \times 5\%, 12,000억원 \times 1\%]$ *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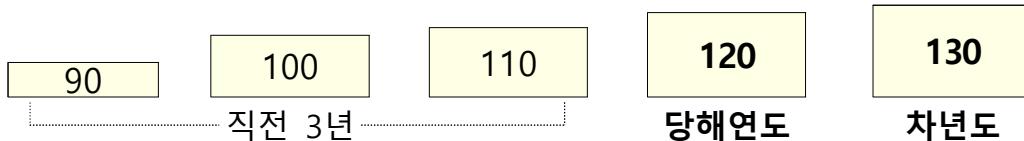
④ 개정 내용(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❶「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상장법인으로서, ❷주주환원금액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frac{\text{분리과세}}{\text{소득금액 비율}} = \frac{\text{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times 10\%}{\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참고)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사례 적용

-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 100, 당해연도 120(증가율 20%), 차년도 130 배당 가정



$$\blacksquare \text{ 소득금액 비율} = \frac{20 + 100 \times 10\%}{100} = 30\%$$

$$\Rightarrow \text{분리과세 금액} = 130 \times 30\% = 39$$

- (과세방식) 현금배당 금액 중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9% 원천 징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종합과세자는 ① 25% 뷰리과세 또는 ② 종합과세(2천만원 한도 9%) 중 선택

* ① 배당 증가금액 등 \times 25% + 그 외 배당 \times 비교 종합과세

② 배당 증가금액 등(2천만원 한도) × 9% + 그 외 배당 × 비교 종합과세

- (적용기간) '26.1.1.~'28.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금

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사례

- 甲사(자율공시 이행한 상장법인)가 '22~'24년 평균 1,000억원 '25년 1,200억원 주주환원
→ 甲사 개인주주의 분리과세 소득금액비율 : 30%(증가율20%+10%)
- '26년 甲사 개인주주 소득내역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
 - 주주A : 배당소득 1,200만원, 다른소득 없음 → 360만원(1,200만원×30%)
 - 주주B : 배당소득 3,600만원, 다른소득 없음
 - 주주C : 배당소득 3,600만원, 다른소득 10억원 1,080만원(3,600만원×30%)

주주		산출세액(지방세 제외) 및 납부방법	경감액
A	현행	168만원 원천징수(1,200만원×14%)로 납세 종결	△18만원
	개정	150만원 원천징수(360만원×9% + 840만원×14%)로 납세 종결	
B	현행	504만원 납부 =Max[ⓐ3,600만원×14%, ⓑ2천만원×14%+1,600만원×기본세율]	△54만원
	개정	Min[①,②] = ② 450만원 납부 ①(25% 분리과세 선택) 622.8만원 $=1,080\text{만원} \times 25\% + \text{Max} \left[\begin{array}{l} \text{ⓐ} 2,520\text{만원} \times 14\% \\ \text{ⓑ} 2\text{천만원} \times 14\% + 520\text{만원} \times \text{기본세율} \end{array} \right]$ ②(25% 분리과세 선택X) 450만원 $=\text{Max} \left[\begin{array}{l} \text{ⓐ} 1,080\text{만원} \times 9\% + 2,520\text{만원} \times 14\% \\ \text{ⓑ} 1,080\text{만원} \times 9\% + 920\text{만원} \times 14\% + 1,600\text{만원} \times \text{기본세율} \end{array} \right]$	
C	현행	39,406만원 납부 =Max [ⓐ3,600만원×14% + 10억×기본세율 ⓑ2천만원×14% + 10억1,600만원×기본세율]	△216만원
	개정	Min[①,②] = ① 39,190만원 납부 ①(25% 분리과세 선택) 39,190만원 $=1,080\text{만원} \times 25\% + \text{Max} \left[\begin{array}{l} \text{ⓐ} 2,520\text{만원} \times 14\% + 10\text{억원} \times \text{기본세율} \\ \text{ⓑ} 2\text{천만원} \times 14\% + 10\text{억}520\text{만원} \times \text{기본세율} \end{array} \right]$ ②(25% 분리과세 선택X) 39,352만원 $=\text{Max} \left[\begin{array}{l} \text{ⓐ} 1,080\text{만원} \times 9\% + 2,520\text{만원} \times 14\% + 10\text{억원} \times \text{기본세율} \\ \text{ⓑ} 1,080\text{만원} \times 9\% + 920\text{만원} \times 14\% + 10\text{억}1,600\text{만원} \times \text{기본세율} \end{array} \right]$	

⑥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차이점

- **(도입취지)**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 소득 환류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 목적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차이
- **(적용대상 · 요건)** 적용 대상을 주주(주식시장의 수요자)에서 기업(공급자)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단순화하여 정책 체감효과 증대
 - 또한, 결산배당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달리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도 포함하여 정책 실효성 확대

	'14년 배당소득증대세제	'24년 주주환원 촉진세제(안)
도입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환류를 통한 내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 주주환원: 배당 및 자사주소각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세액공제
지원 내용 배당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14 → 9% ▶ (종합과세) '15년 25% 분리과세 '16-'17년 5%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14 → 9% ▶ (종합과세) 25% 분리과세
핵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증가율,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고배당 기업(<u>요건이 복잡하고 엄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금액을 5% 초과하여 증가시킨 기업 (<u>요건 단순화</u>)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배당*(전체) * 결산배당(중간배당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배당*+자사주소각 * 결산배당(중간배당 포함) ▶ (배당소득세) 현금배당*(일부) * 결산배당(중간배당 포함)

* : 배당소득증대세제 대비 지원 확대사항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p.29)

① 개정 취지

-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납입·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
 -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
- ISA 도입('16.3월)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 및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도 감안

* 서민형의 경우 '18년부터 250 → 4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 상향

② 국내투자형 ISA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

-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
 - 국내 상장주식 의무 투자 비율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

③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

-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
-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납입한도(2억원) 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9%) 적용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

(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상세본 p.31)

* 미술품·저작권·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상품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조각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세법상 과세분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개정 내용)**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 해당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 함

②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

- 조각투자 서비스 취지*, 조세회피 가능성**, 최근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

* 다수의 소액투자를 위한 것으로 증권의 공모(50인 이상)를 전제

** 기초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소득의 무기한 유보 방지 필요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23.12월) 등

③ 배당소득 과세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
- 조각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시 신고·납부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

(4)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상세본 p.35)

① 현행 펀드 과세체계 및 개정 내용

- (펀드 과세체계) 펀드 이익의 분배, 펀드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의 일정 이익은 과세 제외
- (개정 내용)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

< 펀드 이익 계산에 포함 >		< 계산에서 제외(열거) >
■ 채권 등	■ 해외주식	■ 외국펀드
■ 주가지수 기반 장내파생상품(KOSPI200선물 등)		
■ 해외상장 해외주식형ETF · ETN		
■ 국내상장증권 중 해외주식형ETF · ETN		■ 국내상장 증권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증권 중 ETF·ETN		■ 국내상장 증권 기반 장내파생상품
기반 장내파생상품		■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 (개정 취지) 해외주식,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경우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도 과세대상에 포함

② 시행시기

- 소득형 시행일 이후 펀드에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부터 적용
- 소득형 개정안은 '24.8월 입법예고 거쳐 9월 중 공포·시행 예정

1.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상세본 p.36)

① 개정 취지

□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 유도

- 만혼 · 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 심화 →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필요

② 적용 시기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③ 적용 사례

□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

→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 '26년 3월 혼인 신고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상세본 p.39)

① 개정 취지

-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노력 뒷받침
 - 아울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 해소

② 현재 출산·양육수당과 구분

-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
 - 현재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하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현행 유지)
 -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최대 2회 분할 지급)에 지급받는 급여

③ 적용 특례

- ('25.1.1.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 ('24.1.1.~'24.12.31. 지급한 출산지원금)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일이 '21.1.1.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

④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과세 제한 이유

-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⑤ 세부담 완화 사례

-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000만원인 B씨가 '25.1.1.에 자녀를 출산하여 회사에서 '25.6.1.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 (비과세 적용 전 근로소득세) 약 2,440만원*

-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 약 260만원*

* 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약 2,180만원의 세부담 경감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상세본 p.40)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개정 내용)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현행(만원)	개정(만원)
자녀세액공제 (8~20세)	1명	15
	2명	35
	3명 이상	35+30×(자녀수-2)

② 기대 효과

-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양육부담 완화 및 출산 유인 효과 기대
 - 특히,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생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추가 출산 유인 제공
-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결혼·출산에 친화적 성격의 세제를 만들어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상세본 p.41)

① 현행 제도

- 도서공연비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30%) 적용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요내용 >

구 분	구체적 내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도서공연비)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u>300</u>	<u>250</u>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u>300</u> <u>200</u> -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서민·중산층의 대중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음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 월 소득수준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
: (100만원 미만) 9.3 (200~300만원) 9.7 (400~500만원) 14.7 (900만원 이상) 23.7

- **(개정 내용)**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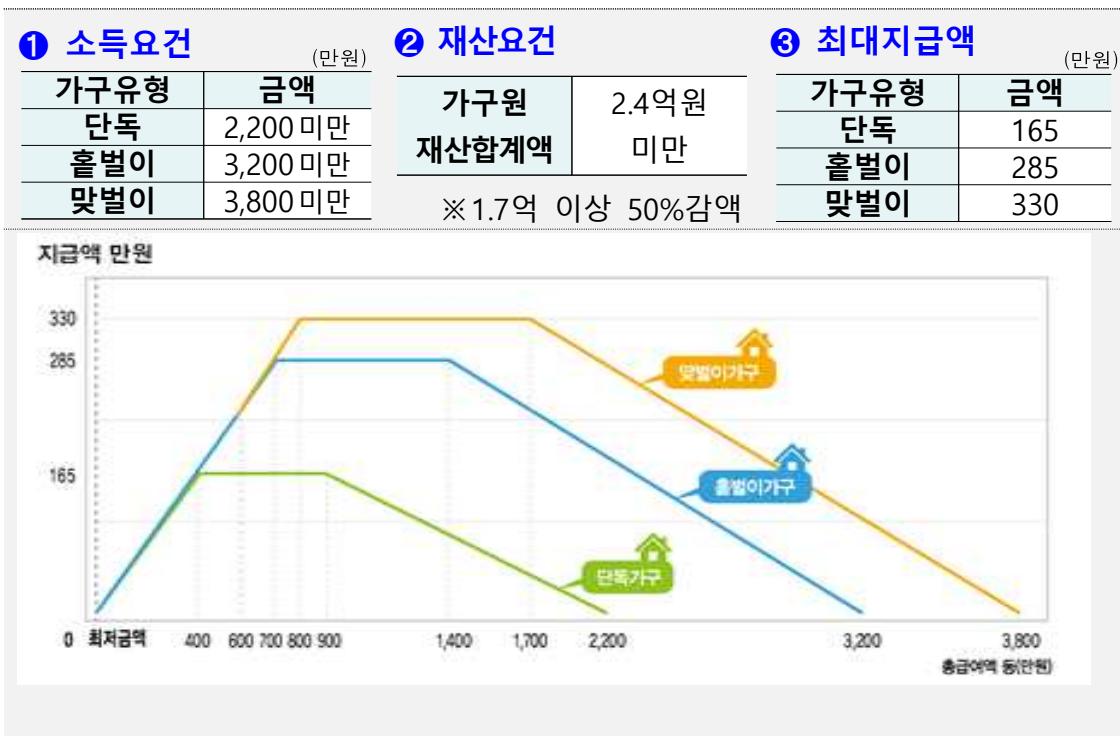
-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23년 기준 약 13,000여개)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
-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공제율)** 30%
-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

(2)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상세본 p.43)

① 근로장려금(EITC) 개요

- (도입목적)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08년 도입)
- (지원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산정방식)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른 EITC 지급액 산정



- (지급시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
 -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지급 가능(12월 및 다음 해 6월, 연 2회)
- (지급실적, '22년 귀속) 416만 가구, 4.6조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개정 취지)** 혼인이 근로장려금 수급 시 폐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③ 개정 효과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3,800 \rightarrow 4,400$ 만원)로 약 5만가구가 수혜가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

(3)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상세본 p.47)

① 현행 제도

□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제도

-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 경력단절여성 공제액 우대(만원): (중소기업)+600 (중견기업)+350 (대)+400

** 우대 대상: 청년,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감면 대상: 청년(5년간 90% 감면),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①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표준산업 중분류)의 기업에 취직할 것

③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④ 퇴직 후 2~15년 이내일 것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경력단절남성 지원)**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

□ **(업종제한 폐지)**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표준산업 중분류) 재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추가)** 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한(8세)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

[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상세본 p.48)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개정 내용)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수소차는 현행 유지

<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개정내용>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100만원→70만원	300만원	400만원
(교육세 등 포함시)	(143만원→100만원)	(429만원)	(572만원)

②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한 이유는?

-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 심층평가 결과* 등을 감안한 것임

* '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KDI) :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고려할 필요

3.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1)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상세본 p.54)

① 현행 제도

-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건설기계의 경우 '18.1월 이후 취득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 ('20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② 개정 취지

-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급증 완화 및 노후화된 기계 대체를 통한 산업안전 강화
 -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 처분시 일시적으로 세부담 급증*
- * 신규 건설기계 구입을 위해서는 기존 노후된 건설기계의 처분이 필요하나 세부담으로 인해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

③ 적용 사례

- (가정)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20년 건설용 크레인 구입(취득가 2억원) 후
'25.1.1. 해당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
- 건설용 크레인의 내용연수(5년) 동안 감가상각비(연 4천만원)를
필요경비로 계상 → '25.1.1. 현재 장부가액 0원
 - '25.1.1. 처분시 처분이익 1억 원 [1억원 - 장부가액(0원)]

□ (세부담 변화)

- (현행) 소득세 부담 1년간 1,956만원(적용 최고세율 35%)
- (개정) 소득세 부담 4년간 총 1,032만원(적용 최고세율 15%)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세액	60만원	324만원	324만원	324만원

* 별도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주류 관련 제도 개선

(상세본 p.58)

① 탁주의 첨가원료를 확대(향료·색소 추가)한 이유는?

- 탁주에 허용 가능한 첨가물의 확대로 다양한 맛과 향의 제품 개발·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현재는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
 - 개정 시에는 탁주로 분류되어 상표명에 "탁주·막걸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세부담 경감

【참고】 세부담 변화 예시

-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한 [출고가격 1천원, 용량 750㎖](#) 인 주류 1병 세부담
 - (현행) [기타주류](#)로 분류(서울: 과세표준^{*}의 30%) → [246원](#)
*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의 81.9%(기준판매비율 18.1% 적용)
 - (개정) [탁주](#)로 분류(서울: 1ℓ 당 44.4원) → [33원](#)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1)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상세본 p.62)

①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② 개정 취지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되어 옴
-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 하향 조정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상속세 최고세율	40%	40%	55%	30%	45%

[1-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상세본 p.63)

①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구 분	'97년	현 행
기초 공제		2억원
인적 공제	자녀·연로자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 × 5백만원
	장애인	75세까지 연수 × 5백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5~30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 가능(배우자 공제는 별도)

② 개정 취지

-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 ·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5천만원 → 5억원)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세본 p.64)

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간 과세 시행 유예
 -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19.) 성과 등 점검 필요
-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감안
 -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27년('26년 과세기간분) 개시 예정으로, 해외거래 검증 자료로 활용 가능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상세본 p.68)

① 개정 취지

- 주요 기업 등은 자사 및 계열사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제품 구입 시 할인가격 적용
 -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

② 시가의 판단기준

- 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통상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가능

③ 할인금액 적용 사례

- (사례1) A 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4,000만원)의 25% 할인, 종업원 甲은 25% 할인 받아 3,000만원에 구매
 - 甲의 할인금액(1,00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800만원
 -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200만원 근로소득 과세
- (사례2) B 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300만원)의 30% 할인, 종업원 乙은 30% 할인 받아 210만원에 구매
 - 乙의 할인금액(9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240만원
 -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240만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

(4)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상세본 p.70)

① 현행 제도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 (손금불산입 금액)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한 이자비용
 - (적용 예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이자비용 전체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적용 예외 대상인 금융·일반지주회사 중, 일반지주회사는 예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 * 적용 예외 대상: (현행) 금융·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 (개정 취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취지를 고려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차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다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손금산입 허용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2. 비과세 · 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정

(상세본 p.71)

① 현행 제도

- (도입 배경)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통한 과표 양성화

- (적용 대상)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 영수증 발급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등) 개인사업자

- (공제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공제율] 1.3%('27년 이후 1%) [공제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00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50% 하향 조정(1.3→0.65%, '27년 이후 1.0→0.5%)

- (개정 취지) '94년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 감안 시 제도 효과성이 낮음*

* '22년 심층평가 결과(KDI) :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제도 축소 필요

-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제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 적용 중 → 상위 사업자에 한하여 공제율 축소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세본 p.72)

① 개정 취지

- ①전자신고 정착, 관련 ②인프라 확충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

①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이 97% 상회*

* 전자신고율('03→'22년 %): (종합소득세)43.5→99.5 (법인세)92.7→99.6 (부가가치세)33.8→97.1

② 전자신고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어, 지금은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 전자신고가 간편

* 홈택스(인터넷), 손택스(스마트폰), 국세청이 보유자료를 활용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모두채움서비스, 세금비서) 등

- 해외 주요국(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1~6년)하였으며,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폐지

②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부 폐지되는지?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여전히 50%대('23년 52.3%)에 머무르고
있어, 당분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할 계획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상세본 p.73)

① 현행 제도

-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매월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납부

조합유형	조합원 수	조합원 자격
근로자조합	50명 이상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조합	20명 이상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납세조합에 매월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미이행시 가산세 부과)하되,
①조합원 세액공제, ②납세조합에 교부금 지급 등 혜택 부여

- * ① 조합원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 적용(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② 납세조합에 징수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② 납세조합 활용 납부 사례

-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A로부터 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
甲은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5월) 대상*

* 내국법인인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국외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단,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매월 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납부 & 연말정산 대행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상세본 p.74)

① 현행 제도

-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벤처확인)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과 밀접제권역·청년·업종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 (일반 창업) 과밀 0%, 과밀 밖 50% / (청년·생계형) 과밀 50%, 과밀 밖 100% (신성장 서비스업) 초기 3년간 +25%p 감면율 상향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설정(연간 5억원)
- 지방보다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단,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유지)
 - * (현행)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안)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26.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여 1년간 감면율 유예
-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
 - * S/W(정보서비스 등), 콘텐츠(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상세본 p.75)

① 현행 제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
 -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 ① 5년 100% + 2년 50%: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대도시(인구 30만 이상)
 - ② 7년 100% + 3년 50%: 지방 5대 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 ③ 10년 100% + 2년 50%: 그 외 낙후지역

② 개정 내용

-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여전히 정주여건 등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현재 수도권 중에서는 강화, 용진, 연천, 가평이 이에 해당

< 개정안 주요내용 >

이전 前	이전 後	허용여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안 (과밀억제권역 밖)	(현행) 허용 →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 ※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허용
	수도권 밖	허용

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인지?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음
- 수도권과 밀접 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
- 감면요건 개정^{*} 목적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이전지원세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 * ❶ 이전 전 10년 내에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을 받은 기업은 제외,
 - ❷ 이전 후 영위 업종이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
-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
- 최근 非과밀 억제권역 위주로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 * 최근 5년간('19년~'23년) 권역별 인구증감(천명):
(과밀억제) △449 (△2%) (성장관리) +606 (+11%) (자연보전) +59 (+5%)

④ 내년에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개정규정은 '25.1.1.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
- 다만, '24.12.31.까지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
 - * ❶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63①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❷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❸ 공장 이전을 위해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상세본 p.77)

① 개정 내용

-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제외
 - * 배제 업종: (현행) 소비성서비스업 → (추가)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② 개정 취지

- 법인,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 (부동산 임대업 배제) 현재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조특법상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

[7]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상세본 p.79)

① 현행 제도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자를 신고시 건당 50만원, 인당 연간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고소득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통한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05년도 도입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의 건당·연간 지급액 한도를 인하
 - 건당 50만원 → 25만원, 인당 연간 200만원 → 100만원
- (개정 취지)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으로 정책효과는 감소함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로 인한 피해는 과도한 측면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 건수	7,682	11,931	13,025	16,461	21,017
지급액 (백만원)	1,478	2,369	2,842	3,913	4,871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상세본 p.83)

① 현행 제도

- 특정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금융회사의 전용거래계좌에 매입대금(부가세 포함)을 입금하면 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정수 후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차단
 - 현재 금, 철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운용 중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면세점 송객용역* 추가
→ 면세점이 송객용역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
- (개정 취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송객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수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폐업하는 사례 방지

(2)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상세본 p.85)

① 도입 취지

- 조사인력 등 한계로 제한된 수의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통한 사후 세액검증 중
-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을 위해 '관세사'를 통한 월단위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확정납세신고 제도 도입

② 제도 개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수입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세액 납부 허용
(납부기한 최대 45일 연장)

구 분	주 요 내 용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천만불 미만 업체 중 신청한 자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신고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납세)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 확인·작성
신고·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납세)신고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③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

- 관세사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 여부에 대해 기업의 선택권 부여
 - 성실신고 부담(수수료 등)과 납부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비교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④ '28.1.1.부터 시행하는 이유

- 전산시스템 구축*, 고시 · 지침 등 하위법령 제개정, 수입업체 · 관세사 안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8년 시행

* ('25~'27) 정보화 예산 반영 및 시스템 개발 → ('28) 시행

[3]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상세본 p.88)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또는 출국시 정산

- (현 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안)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

- (개정 취지)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여 세원관리 강화

- 이를 위해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원천 세율을 20%로 既상향(18년 개정)
-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3년 초과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예: 3년 1개월) 3% 원천징수세율 적용 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상세본 p.89)

① 현행 제도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10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 방지를 위함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소득세법」 §94①3호)

** (예) 해외주식 1만주, 취득가액 1억원, 시가 3억원의 경우

(본인 양도시) 양도차익 2억원 →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 20%) 3,950만원
(배우자 시가로 증여 후 양도시) 양도차익 0원

- (개정 내용) 양도일 전 1년 이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③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

-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설정

-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98~'10년)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도 감안

* ('98~'00년) 3년, ('01~'08년) 1년, ('09~'10년) 3년

[5]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상세본 p.90)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 및 거주자 범위 일부 확대

※ 거주자/비거주자 과세범위: (거주자)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

❶ 거주자 범위를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현행) 1과세기간 183일 → (개정안) ① 1과세기간 183일 또는 ② 계속하여 183일

❷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 (현 행) 관광·질병치료 등 일시적 사유로만 규정(소득령)

(개정안) 친지방문, 출장·연수 등 직업·사업 관련 사유 추가하여 구체화(소득칙)

❸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 (개정 취지) 거주자 판정기준 명확화

② 183일 기준 변경 관련 사례

□ (사례1) '26.8.10.부터 국내에 계속하여 거소를 둔 경우

- (현행) '27.1.1.부터 183일이 되는 '27.7.2.부터 거주자
- (개정) '26.8.10.부터 183일이 되는 '27.2.8.부터 거주자

□ (사례2) '26.8.10. ~ '27.6.30.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 (현행) '26년, '27년 모두 비거주자*

* '26년 144일, '27년 181일로 183일 기준에 미달

- (개정) '27.2.8. ~ '27.6.30. 거주자

[6]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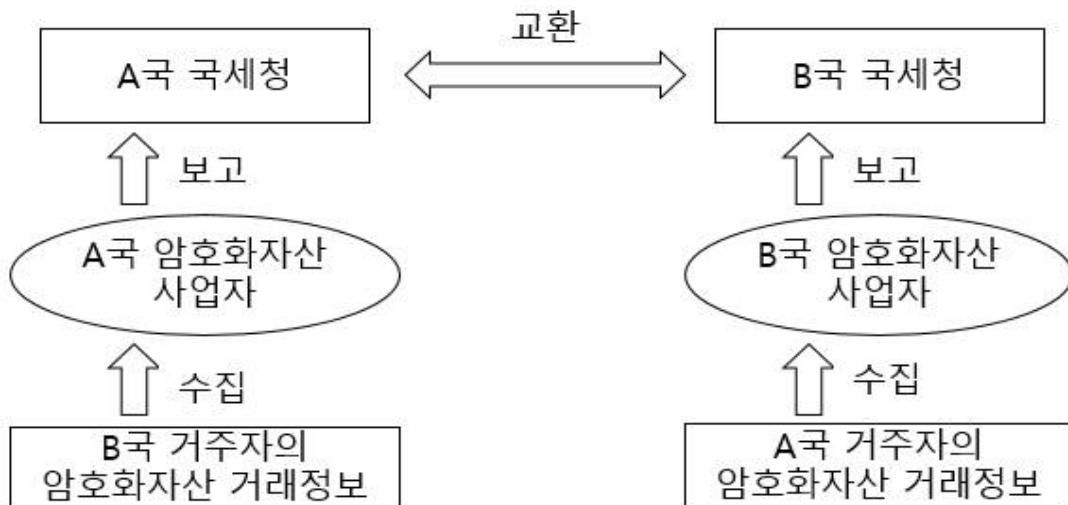
(상세본 p.94)

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개요

-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후,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는 체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 토큰형 증권

<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방식 >



② 교환대상 정보

- 교환대상 정보는 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

* 사용자의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및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암호화자산의 이름, 거래 유형, 거래의 총 지급·수취 금액, 총거래량, 거래 횟수) 등

- 거주자·내국법인은 이중거주자인 경우* 교환대상에 포함

* 예) 우리나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자이나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

(7)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상세본 p.98)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개요

- 납세의무자(법인) 재산의 강제징수로도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이 부족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의무

* 과점주주의 요건

: (국세기본법 §39) 주주 또는 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해당 사원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으로 한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영농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점조합원) 추가*

* 과점주주와 동일한 요건 적용

- (개정 취지) 영농 · 영어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조합원의 과세회피를 방지할 필요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상세본 p.101)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개정 취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부자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뒷받침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
 -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상세본 p.102)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해외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 효율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건수(만건) : ('21) 8,838 → ('22) 9,612 → ('23) 13,144

-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 전 제출한 거래정보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에 활용

- (개정 내용) 해외직구 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26년 시행)

- 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 ② (거래정보 제공)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

*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 ③ (통관효율화)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 등 적용

* (현 행)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탁송품) X-ray 검사

(개정안)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

② '26년부터 시행하는 이유

-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6년부터 시행

(3)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상세본 p.105)

① 현행 제도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23년 시행)

* 우리나라 국채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채·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투자자별로 비과세 신청서 및 해당 국가의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 ❶ 국외투자기구를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여 하위 투자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비과세 적용
- ❷ 국외투자기구의 하위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함

- (개정 취지)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경우 하위 투자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지속된 애로를 반영

⇒ 우리나라 국채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여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원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상세본 p.107)

① 현행 제도

- 국세환급금* 중 ①체납 국세 등에 충당 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②1년간 미수령한 경우 고지분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

* 납세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해주는 금액

-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요건 충족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환급금 자동 충당의 요건 중 금액요건을 상향

- 충당 후 잔액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 (개정 취지) 납세자가 환급금 수령을 적기에 하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소멸시효(5년) 만료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

*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20만원인 경우 개정 효과
(현 행) 5년간 미수령시 소멸시효 만료로 전액 국고에 귀속

(개정안) 1년간 미수령한 경우 환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자동으로 충당 가능

2. 납세자 권리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상세본 p.111)

① 현행 제도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대상)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원 초과
 - (신고 기한)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6.1.~6.3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수준 완화**

* ①소송·상호합의 등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②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과소·미신고>(현행) 위반금액 10~20%, 20억원 限 → (개정안) 위반금액 10%, 10억원 限

<거짓·미소명>(현행) 위반금액 20% → (개정안) 위반금액 10%

- (개정 취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부담 완화

- (비거주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비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필요
-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중 정보제공은 불필요
- (과태료) 현행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따른 국조법상 다른 과태료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하 추진

* 높은 과태료 금액 외에도, 다른 과태료와 달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누진율 적용

(2)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상세본 p.116)

① 현행 제도

- 납세자가 재난·중상해 등으로 국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가능
 -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시 가능(국정법 §13, §14)
 - (원칙) 9개월까지 연장 · 유예 가능
 - (특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 유예
 - ①고용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②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해당 부가 세목에 대해 ③신청 시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재난 등으로 부상당한 자도 특례 대상에 추가
- (개정 취지)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타 지역 사업자도 동일하게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어려우나 현행법상 특례 적용 불가
 - 대형 재난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 정상화 지원

(1)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상세본 p.140)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 현행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 (납입한도) 1,800만원 + ISA계좌 만기시 전환금액 + 연금주택
양도 주택차액(누적한도 1억원)
 -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만기 ISA전환금 세액공제한도 추가 : MIN(전환금액×10%, 3백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현행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에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의 추가납입 허용
 - (대상자*)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 기초연금수급자
* 부동산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대상부동산) 10년 이상 보유 주택, 건물, 토지
 - (납입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중 최대 1억 원(생애누적)
 - (납입기간) 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 취지) 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동산 연금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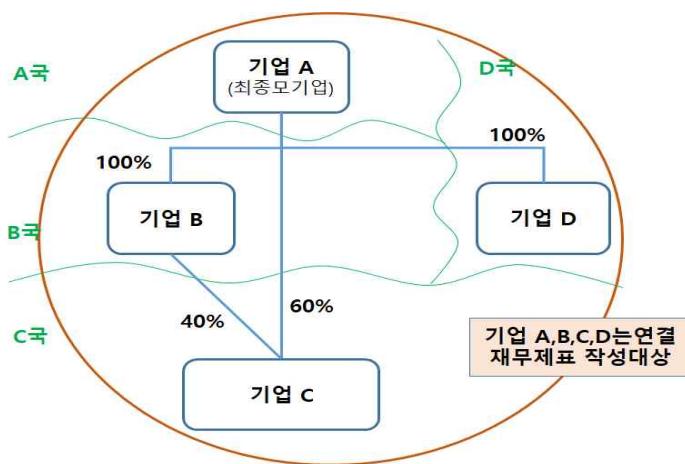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상세본 p.151)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예시】



- 각 개별기업 A, B, C, D는 지배종속관계로 연결된 그룹
- 기업 A는 기업 B·C·D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최종모기업
- 기업그룹(A·B·C·D)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begin{aligned} \text{■ 추가세액} &= (15\% - \text{국가별 실효세율}) \\ &\times (\text{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text{실질기반제외소득}^*) \end{aligned}$$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 (추가세액 납부) 소득산입규칙에 따르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예) 기업C에서 추가세액 10이 발생한 경우 → 기업A가 A국에 10을 납부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 ①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blacksquare \text{ 실효세율} = (\text{조정대상조세 합계}) \div (\text{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②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초과이익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blacksquare \text{ 추가세액} = (15\% - \text{실효세율}) \times \text{초과이익(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text{실질기반제외소득}^*)$$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적용 예시】

- A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B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A기업	B1기업	B2기업
①법인세비용	200	50	45
②조정사항(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50	5	-
③조정대상조세(①+②)	250	55	45
④당기순이익	800	450	255
⑤조정사항(조세비용 등)	200	50	45
⑥글로벌최저한세소득(④+⑤)	1,000	5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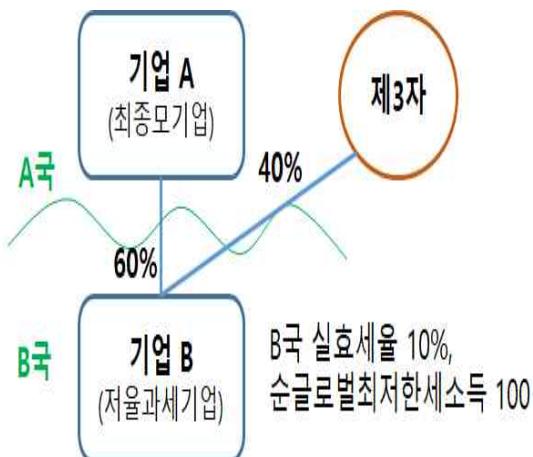
-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B국의 실효세율은 $12.5\% = (55+45) \div (500+300)$,
추가세액은 $20 = (15\% - 12.5\%) \times (500+300)$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text{ 소득산입비율} = 1 - \frac{\text{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text{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frac{\text{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예시】



- ① 기업B 추가세액 = $(15\%-10\%) \times 100 = 5$
-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40) \div 100 = 60\%$
 \therefore 기업A는 $5 \times 60\% = 3$ 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⑤ 신고기한 특례 규정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26.6.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더라도 '26.6.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취지)**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그 후 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로 규정
 -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경우 신고기한은 '26.6.30일이나,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26.6.30일 전에 신고의무 도래 가능
⇒ 기업의 이행부담을 감안하여 '26.6.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지 않도록 특례 마련

【'26.6.30일 전 신고의무 발생 예시(OECD)】

- '24년 사업연도가 11개월인 경우('24.1.1.~'24.11.30.)
 - '24.1.1일 시작하는 최초적용연도의 사업연도종료일이 '24.11.30일로 이로부터 18개월 후인 '26.5.31일이 신고기한
- '24년 사업연도는 12개월이었으나, '25년에 사업연도를 2개월로 변경한 경우 ('25.1.1.~'25.2.28.)
 - '25.1.1일 시작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 '25.2.28일로 이로부터 15개월 후인 '26.5.31일이 신고기한